

□ ‘안마원 불허용도 삭제’ 실시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사항

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(시행지침 포함)

| 기정 | | 변경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기정) 조서 나)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2) 공동주택용지 | |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기정) 조서 나)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2) 공동주택용지 | |
| AC | AC7, AC9~AC12 허용용도 | AC | AC7, AC9~AC12 허용용도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 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 • 노유자시설 • 운동시설 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주) 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공동주택, 오피스텔 및 준주택 제외) 비율은 용적률의 10% 이상으로 계획한다. ※ 용적률 10%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※ (2013.11.14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서고제2013-379호)이전 협의완료 혹은 승인, 인가(변경승인, 인가 등 포함)된 건축물은 기정 지침을 적용한다.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 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 • 노유자시설 • 운동시설 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주) 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공동주택, 오피스텔 및 준주택 제외) 비율은 용적률의 10% 이상으로 계획한다. ※ 용적률 10%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※ (2013.11.14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서고제2013-379호)이전 협의완료 혹은 승인, 인가(변경승인, 인가 등 포함)된 건축물은 기정 지침을 적용한다. | |

기정 **변경**

(4) 상업용지

(4) 상업용지

| 도면 번호 | 위치 | 구분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B | B1~B11 | 허용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 (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 (정신병원 및 요양소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 |
| | | B4~B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| B1~B3 (주거지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B | B1~B11 | 불허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주택,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종교시설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, 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공장,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|
| | | B4~B7, B9, (역세권 및 간선가로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강,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|
| | | B8, B10, B11 (이면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주택,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|

| 도면 번호 | 위치 | 구분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B | B1~B11 | 허용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 (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 (정신병원 및 요양소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 |
| | | B4~B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|
| | | B1~B3 (주거지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B | B1~B11 | 불허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주택,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종교시설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, 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공장,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|
| | | B4~B7, B9, (역세권 및 간선가로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강,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|
| | | B8, B10, B11 (이면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주택,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수련시설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|

| 기정 | 변경 |
|----|----|
|----|----|

(5) 업무용지

| 구분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|--|
| 불허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위락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관광휴게시설 • 장례식장 |

(5) 업무용지

| 구분 | 계 획 내 용 |
|----------|--|
| 불허용 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위락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차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관광휴게시설 • 장례식장 |

(6) 지원시설용지

| 구분 | 계 획 내 용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허용용 도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10%; text-align: center;">주거 복합 시설</td> <td style="width:10%; text-align: center;">DS3, DS4, DS10, DS13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허용용 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 복합 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S8, DS9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</td> </tr> </table> 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허용용 도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
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| | | | | | | |
| 허용용 도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| | | | | | | | |
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| | | | | | | |

(6) 지원시설용지

| 구분 | 계 획 내 용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허용용 도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10%; text-align: center;">주거 복합 시설</td> <td style="width:10%; text-align: center;">DS3, DS4, DS10, DS13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허용용 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업 복합 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S8, DS9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</td> </tr> </table> 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허용용 도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
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| | | | | | | |
| 허용용 도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| | | | | | | | |
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의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•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•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•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•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 | | | | | | | |

| 기정 | 변경 |
|----|----|
|----|----|

(마) 주차장

| | |
|----------|---|
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차장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•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건축연면적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외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- 종교시설 -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- 운수시설 -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 |
|----------|---|

(마) 주차장

| | |
|----------|---|
| 허용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차장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•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건축연면적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외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- 종교시설 -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- 운수시설 -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 |
|----------|---|

(나) 편익시설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S2~S11 <변경> | 1지구 | S1~S4, S6, S9, S10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외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• 의료시설 중 병원 • 교육연구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허용 용도 | S1~S4 S6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외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• 의료시설 중 병원 • 교육연구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건폐율 | S1~S4 S6~S11 | 50%이하 |
| | 용적률 | S1~S4 S6~S11 | 250%이하 |
| | 높이 | S1, S2, S7~S9 | 최고고도지구(해발57.86m) 이하 |
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변(광3-19, 대2-41, 대3-2, 중2-17) : 5m - 도로변(대2-2, 중1-1, 중1-11, 중1-17, 중1-18, 중2-2, 중2-34, 중3-45, 중3-46, 중3-47, 소2-22, 소2-27, 소1-6) : 3m - 녹지변(연결녹지40, 연결녹지41, 경관녹지8) : 3m - 인접대지경계(T2, R2, R4, G1, F1, F3, K1) : 3m - 공원변(근린공원1, 3) : 3m - 구역경계 변 : 3m(S3) - 구역경계 변 : 1m(S4) • 공공보행통로(S1) - 공공보행통로변(S1) | | |
| 주) S1(편익시설용지1) 공공보행통로 설치 위치는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, 학교 경계부를 따라 설치하는 원칙 유지 | | | |

(나) 편익시설

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S2~S11 <변경> | 1지구 | S2~S4<변경>, S6, S9, S10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외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• 의료시설 중 병원 • 교육연구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허용 용도 | S2~S4 <변경> S6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장외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• 의료시설 중 병원 • 교육연구시설 • 운동시설(옥외골프연습장 제외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건폐율 | S2~S4<변경> S6~S11 | 50%이하 |
| | 용적률 | S2~S4<변경> S6~S11 | 250%이하 |
| | 높이 | S1<삭제> S2, S7~S9 | 최고고도지구(해발57.86m) 이하 |
|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한계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변(광3-19, 대2-41, 대3-2, 중2-17) : 5m - 도로변(대2-2, 중1-1, 중1-11, 중1-17, 중1-18, 중2-2, 중2-34, 중3-45, 중3-46, 중3-47, 소2-22, 소2-27, 소1-6) : 3m - 녹지변(연결녹지40, 연결녹지41, 경관녹지8) : 3m - 인접대지경계(T2, R2, R4, G1, F1, F3, K1) : 3m - 공원변(근린공원1, 3) : 3m - 구역경계 변 : 3m(S3) - 구역경계 변 : 1m(S4) • 공공보행통로(S1) <삭제> - 공공보행통로변(S1) <삭제> | | |
| 주) S1(편익시설용지1) 공공보행통로 설치 위치는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, 학교 경계부를 따라 설치하는 원칙 유지 <삭제> | | | |

기 정

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3장 건축물용도에 관한 사항

제9조 (허용용도)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동주택용지 | 주상복합용지 AC7, AC9~AC1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)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(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상업용지 | 주거지번 B1~B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(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. 단, 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소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 |
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판매시설(매장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
|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|
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판매시설(매장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방송통신시설 |
| 편의 시설 | S2~S4, S6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판매시설(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S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|
| 주차장 | 11~1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차장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건축연면적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종교시설 |

변 경

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3장 건축물용도에 관한 사항

제9조 (허용용도)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동주택용지 | 주상복합용지 AC7, AC9~AC1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)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(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상업용지 | 주거지번 B1~B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판매시설(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. 단, 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소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 |
| 주거 복합 시설 | DS3, DS4, DS10, DS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(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)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판매시설(매장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|
| | DS5~DS7, DS11, DS12, DS14~DS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|
| 상업 복합 시설 | DS8, DS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판매시설(매장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) 노유자시설(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)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호텔에 한함) 방송통신시설 |
| 편의 시설 | S2~S4, S6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판매시설(상점 중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| | S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제외)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|
| 주차장 | 11~1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차장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건축연면적의 30%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<삭제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장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식물원 제외) 종교시설 |

| | | |
|--|--|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- 운수시설 -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 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 |
|--|--|--|

| | | |
|--|--|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. 단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) - 운수시설 -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 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에 한함) |
|--|--|--|

제10조 (불허용도)

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업무용지 | C1~C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• 숙박시설(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위락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관광유게시설 • 장례식장 |
| 상업용지 |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 B4~B7, B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, 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위락시설 • 장례식장 |
| | 이면부 B8, B10, B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장례식장 |
| 기타 시설용지 | 편익시설 S1~S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
제10조 (불허용도)

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업무용지 | C1~C1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식재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• 숙박시설(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위락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관광유게시설 • 장례식장 |
| 상업용지 |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 B4~B7, B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식재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종교시설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운수시설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, 『관광진흥법』에 의한 호텔 제외) • 공장,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위락시설 • 장례식장 |
| | 이면부 B8, B10, B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주택, 공동주택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<식재>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의사, 총포판매소<변경>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육외골프연습장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 • 판매시설(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)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자동차관련시설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• 묘지관련시설 • 자원순환 관련시설<변경> • 수련시설 • 운동시설(육외골프연습장에 한함) • 교정 및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• 장례식장 |
| 기타 시설용지 | 편익시설 S2~S11 <변경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
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4장 기타 공공시설

제23조(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)

④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외 시설(이하 근린생활 시설 등)과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.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·식물원,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, 소매시장(『유통산업발전법』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)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,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.

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제4장 기타 공공시설

제23조(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)

④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외 시설(이하 근린생활 시설 등)과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.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**안마원<삭제>**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장의사, **총포판매소<변경>**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골프연습장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동·식물원,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, 소매시장(『유통산업발전법』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), 상점 중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,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.